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2. 12. 04
북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.11.20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.11.22.
- 다. 상정일자 :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(2012.12.04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강 창 수 주택과장

가. 제안이유

대다수가 극빈층인 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이 부담하는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,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 근거 마련 (안 제4조제1항제2호)
- 2)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대한 심의 생략(안 제10조제1항제2호)

- 3)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비율 규정(안 제10조제3항 별표 1)
- 4)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금에 대한 상한액 제외 규정
(안 제10조제3항 별표 1)

3. 검토보고 (김은모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「주택법」 제43조제8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2005.9.26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였으나, 조례제정 당시에 마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지원을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.

0 최근 성산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자살까지 선택하는 불행한 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,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마련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, 영구임대아파트 내 복도등·통행로등 및 옥외 보안등을 점등하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이 되어 자살 등 불행한 사건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, 아파트 조도개선을 권고하였으나 공동 전기료 부담이 어려워 조도개선을 반대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의 절박한 경제적인 사정을 알게 되었고, 지난 10월 8일에 마포경찰서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“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업무협약 체결”을 하는 등 생명존중 인식개선과 자살방지 예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있음.

0 마포구의회에서도 제172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성산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아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매우 궁핍한 생활때문에 공동주택 전기료가 부담이 되고 있

으므로 자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 전기료 지원을 구청장에게 요구한 바 있음.

0 또한 서울시에서는 2010년 10월 「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」을 공문으로 시달하여 자치구별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하여,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8개구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음.

0 본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고, 우리 구보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타구에서도 이미 공동 전기료 시행을 하고 있으며,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은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매우 존귀한 것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공동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계속되는 불미스런 사건 발생 예방과 자살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나,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지원하도록 한 공동 수도료에 대한 대책과 일부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보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 등 주민들의 공동 주택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함께 강구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도 아울러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